

[EU] 5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첨가물 규정)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

* 유럽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 규정 no 2017/874 (2017.05.22.)

- 유럽의회 (European Parliament) 규정 no 1333/2008은 첨가물, 효소, 향료 및 영양소 사용법 및 사용 허용량에 대해 규정 함
- 2016년 26일, 부탄 (butane), 이소부탄 (isobutane) 및 프로판 (propane)이 착색제 제조에 사용 허가 신청이 된 바 있으며, 과학적인 실험 결과, 일정한 양 한에서 해당 물질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
- 따라 본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874은 규정 no 1333/2008의 붙임 III (Annex III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:

추가 식품 첨가물		최대허용량	식품 첨가물 사용 가능 제품
E번호	명칭		
E 943a	부탄 (Butane)	최종 식품에 1mg/kg	붙임 II, C파트 (Annex II, part C)에 규정된 그룹 II 및 III의 착색제 제조에 사용 가능 (*전문적인 사용에 한함)
E 943b	이소부탄 (Isobutane)	최종 식품에 1mg/kg	붙임 II, C파트 (Annex II, part C)에 규정된 그룹 II 및 III의 착색제 제조에 사용 가능 (*전문적인 사용에 한함)
E 944	프로판 (Propane)	최종 식품에 1mg/kg	붙임 II, C파트 (Annex II, part C)에 규정된 그룹 II 및 III의 착색제 제조에 사용 가능 (*전문적인 사용에 한함)

2. (규정) 살생제 제조 물질 관련 규정 개정

*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794 (17.05.10) ; 2017/796 (17.05.10) ; 2017/802 (17.05.10)

- 5월 10일, 유럽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는 사용승인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살생제 제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함
- 이산화 규소(silicon dioxide)/규조토(kieselguhr) 평가결과, 유형 18번 살생제(절치동물 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, 진드기 박멸제 및 기타 제품)에 사용승인
- 디크로프루아니드(dichlofluanid) 평가결과, 유형 21번 살생제(선박, 수경재배 장비, 기타 물 관련 장비의 오염 생물(미생물 및 상위 식물 혹은 동물종) 성장 방지제)에 사용승인

- 유형 5번 살생제(사람 및 동물 식수 살균제)에 PHMB (polyhexamethylene biguanide) 사용 평가결과, 상용 불허
- 사용허가 물질의 사용 조건은 다음 표와 같음

기본명	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 (IUPAC) 지정명	최소 순도	허가발효 일	허가만료일	살충제유형	특수 조건
이산화 규소 (silicon dioxide)/ 규조토 (kieselguhr)	이산화 규소 (silicon dioxide)/ 규조토 (kieselguhr) CE no : 없음 CAS no : 61790-5 3-2	1000g/kgp (100%)	2018년 11월 1일	2028년 10월 31일	18 (EU 규정 no 528/2012, Annex V에 정의된 그룹)	살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함: 1. 살생제 평가 시, 사용승인 이 필요하나 유럽연합에서 평가하지 않은 노출, 위 험, 효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. 사용평가에서 강조한 위험 에 대하여 전문적, 비전문 적 사용자에게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함 3. 식품에 잔류물이 남을 가능성이 있을시 최대 잔류허가량인 MRL (Maximum Residue Limit)를 추가로 규정 할 필요가 있음
디 크로 프 루아니드 (dichlofl uanid)	N-(Dichlorofluoro méthylthio) - N', N' -diméthyl-N-phény lsulfamide No CE: 214-118-7 No CAS: 1085-98-9 CE no : 214-118-7 CAS no : 1085-98-9	96% p/p	2018년 11월 1일	2025년 12월 31일	21 (EU 규정 no 528/2012, Annex V에 정의된 그룹)	살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함: 1. 살생제 평가 시, 사용승인 이 필요하나 유럽연합에서 평가하지 않은 노출, 위 험, 효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. 향후 디크로프로아니드를 함유 제품이 비전문가에게 사용이 허가될 경우, 제조 자들은 제품 사용에 적합 한 장갑을 제품과 함께 공 공해야 함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검역) 과실 검은무늬병에 대한 조치 사항

* 유럽 위원회 규정 no 2017/801 (2017.05.08.)

- EU 지침서 no 2000/29/CE (2000.05.08)는 식물에 유해한 생물 예방조치 및 증식 억제 관련 규정
- 그 중 붙임 II는 *Phyllosticta citricarpa*을 언급

- 본 생물이 발생시키는 과일 검은무늬병은 과일 농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,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대항조치를 규정 함
- 2016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르헨티나산 과실의 통관문제사례가 정기적으로 고지 됨. 유럽위원회는 아르헨티나 검역보증서들은 *Phyllosticta citricarpa*에 대한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
- 따라 본 규정은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 및 우루과이산 과일을 더 엄격한 규칙과 검사를 요구함
- 예를 들어 앞으로 아르헨티나산 과일은 지침서 2000/29/CE에 규정된 보증서가 요구됨
- 과일이 *Phyllosticta citricarpa*에 대한 예방조치 및 검사가 된 농에서 생산되었다는 기재 요구
- 적어도 600 과일 샘플중 하나의 샘플은 30톤 당 확인을 하여 검은무늬병의 증상은 포장하기 전 과정까지 테스트 되어야함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7.1.1						

- *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(별첨)
- * 출처 명확히 기재(URL 포함)
- *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